

의안번호	제 495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4월 7일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강태원의원의외 6명
발의연월일	2010년 4월 7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495
----------	-----

발의연월일 : 2010년 4월 7일
 발 의 자 : 강태원,최미애,최광옥
 권광택,이영복,김법기
 이규완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도 소관 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동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도 해당 위원회 발의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57조)
- 입법예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2조의2)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안 제17조, 제20조, 제37조, 제47조, 제55조, 제59조)

3.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조제2항·제22조의2제1항·제37조·제47조제3항·제55조·제59조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의장은 의원이나”를 “의원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의장명의로 예고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u>그렇지 않다.</u>
제20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0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
제22조의2(입법예고) ① 의장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u>그러하지 아니한다.</u>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u>한다.</u>	제22조의2(입법예고) ①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u>그렇지 않다.</u>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u>하되, 의장명의로 예고한다.</u>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제47조(투표절차) ③.....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u>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47조(투표절차) ③.....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u>그렇지 않다.</u>
제55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55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u>그렇지 않다.</u>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u>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u>그 밖의 의안을</u> 제출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삭제></p>
제59조(위원의 발언)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부칙(2009.6.26,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위원의 발언)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u>그렇지 않다.</u> 부칙(2010.0.0, 제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 57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2.26]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교육의원은 시·도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